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Seniors Nursing Home
시니어스
너싱홈

시니어스너싱홈

제6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하며, 계약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3. 시설은 시설의 형편과 경영철학 그리고 국가의 복지철학에 따라 언제든 치매전담실로 변경될 수 있다. 이때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 또는 수급자<가족>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수급자<가족>는 타 시설로 전원하여야 한다. 이 때 시설은 수급자<가족>의 타 시설로의 전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019.01.01. 신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인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아래 표와 같이 한다.(세부내역은 계약서 참조)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5등급
요양급여 요양보호사 2.1:1 이상		90,450	83,910	79,240
요양급여 요양보호사 2.1:1 미만				
치매전담실 가형				
치매전담실 나형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100,000 ~ 300,000		
	식재료비(1식)	3,900		
	간식비(1회)	300		
	이/미용료등	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계약의사 진찰비용

초진비용	재진비용
대면 18,410원, 비대면 9,210원	대면 13,160원, 비대면 6,580원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중 의원급 외래환자 진찰료와 연동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0%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세부내역(31일, 2등급기준)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2,973,210	
요양보험 부담비용(공단)	소 계	2,080,970	
	요양급여비용(90%)	2,080,970	83,910*31*80%=2,080,970
개인 부담비용	소 계	892,240	
	요양급여비용(20%)	520,240	83,910*31*20%=520,240
	식사재료비/간식비	372,000	12,000*31=372,000
	상급침실 이용료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 1인실이나 2인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입소자가 없어 1인실 또는 2인실을 임의로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입소어르신이 다쳐서 보상이 필요한 경우 또는 종사자 가족이 입소하는 경우 등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상급침실료의 면제나 감경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은 상급참실료를 면제시키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⑤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및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입소자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⑥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4. 개인적인 물건을 소유할 의무

① 입소자는 개인물건을 소지할 의무가 있으나,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다음과 같은 물품은 개인물건 소지에서 제외된다.

- 라이타, 애완동물, 칼, 기타 혐오물품.등.

제8조(계약의 해지) 어르신(보호자)은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

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시설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